

<25년 이패스 배상책임보험 및 근재보험 정오표>

페이지	교재 내용	수정 내용
P123	문제) • 호프만계수 (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 적용) - 사고 ~ 가동개시연령 : 60개월(50H) - 사고 ~가동연한종료까지 : 600개월(300H) 1. 일실수익 $(15\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100\% \times \cancel{240\text{H}(300-50)} \times (1-1/3) = 48,000\text{만원}$ 2. 합계 48,000만원	문제) • 호프만계수 (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 적용) - 사고 ~ 가동개시연령 : 80개월(70H) - 사고 ~가동연한종료까지 : 600개월(300H) 1. 일실수익 $(15\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100\% \times \mathbf{230\text{H}(300-70)} \times (1-1/3) = \mathbf{46,000\text{만원}}$ 2. 합계 46,000만원
P210	<해설> 잊줄 4번째 홍길동의 사용자인 이패스 건설(민법 제756조, 갑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당사자인 홍길동	홍길동의 사용자인 이패스 건설(민법 제756조), 불법행위 당사자인 홍길동
P219	• 현시종료이후 ~ 가동연한종결까지 $(10\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100\% \times 30\text{H}(61-31) \times (1-1/3) = 4,000\text{만원}$	• 정년이후 ~ 가동연한종결까지 $(10\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100\% \times 30\text{H}(61-31) \times (1-1/3) = 4,000\text{만원}$
P231	• 사망 : 1인당 8,000만원 •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 20만원(14급) • 후유장애 : 1인당 8,000만원(1급) ~ 500만원(14급)	<25년 5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니 다음의 금액으로 암기> • 사망 : 1인당 15,000만원 • 부상 : 1인당 3,000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애 : 1인당 15,000만원(1급) ~ 1,000만원(14급)
P234. 237	1) 사망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자급) 2) 부상 : 피해자 1인당 부상 등급 1급 (1,500만원) ~ 14급(20만원)	<25년 5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니 다음의 금액으로 암기> 1) 사망 : 피해자 1인당 15,000만원 (실 손해액이 2천만

	만원) 3) 후유장해: 피해자 1인당 후유장해 등급 1급 (8,000만원)~14급(500만원)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지급) 2) 부상 : 피해자 1인당 부상 등급 1급 (3,000만원)~14급(50만원) 3) 후유장해: 피해자 1인당 후유장해 등급 1급 (15,000만원)~14급(1,000만원)
P275	• 사망 : 1인당 8,000만원 •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 2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1급) ~ 500만원(14급) <해설> 1. 사망 (한도 8,000만원) 4) 합계 165,000,000원 > 사망한도 8,000만원 ▶ 8,000만원 보상	<25년 5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니 다음의 금액으로 풀기> • 사망 : 1인당 15,000만원 • 부상 : 1인당 3,000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인당 15,000만원(1급) ~ 1,000만원(14급) <해설> 1. 사망 (한도 15,000만원) 4) 합계 165,000,000원> 사망한도 15,000만원 ▶ 15,000만원 보상
P279	• 사망 : 1인당 8,000만원 •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 2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1급) ~ 500만원(14급) <해설> 1. 소비자보장특약 1) 부상 - 보상금액: 4,500만원>1급 한도1,500만원 ▶ 1,500만원 2) 후유장해 - 보상금액: 31,200만원> 1급한도8,000만원 ▶ 8,000만원	<25년 5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니 다음의 금액으로 풀기> • 사망 : 1인당 15,000만원 • 부상 : 1인당 3,000만원(1급) ~ 50만원(14급) • 후유장해 : 1인당 15,000만원(1급) ~ 1,000만원(14급) <해설> 1. 소비자보장특약 1) 부상 - 보상금액: 4,500만원> 1급 한도3,000만원 ▶ 3,000만원 2) 후유장해 - 보상금액: 31,200만원>1급한도15,000만원 ▶ 15,000만원

	3) 지급금액 : 9,500만원 2. 소비자보장초과추가특별약관 보상금액 (과실 적용함) 19,050만원(과실적용실제손해) - 9,500만원(소비자보장특별보상금) = 9,550만원 ⇒ 9,550만원 < 한도 10,000만원 ▶ 9,550만원원 보상	3) 지급금액 : 18,000만원 2. 소비자보장초과추가특별약관 보상금액 (과실 적용함) 19,050만원(과실적용실제손해) - 18,000만원(소비자보장특별보상금) = 1,050만원 ⇒ 1,050만원 < 한도 10,000만원 ▶ 1,050만원원 보상
P292	2. 소극적 손해 1) 치료 상실수익 ① 사고 ~ 퇴원: 500만원×100%×3H=1,500만원 ② 퇴원이후 ~ 치료종료: 500만원×20%×2H(5-3)=800만원 ③ 계 : 2,300만원 2) 이후 상실수익 ①치료종료~정년: 500만원×20%×100H(105-5)=10,000만원 ②정년이후~가동종료: (15만원×20일)×20%×30H(135-5)=1,800만원 ③ 계 : 11,800만원 3) 소계 : 14,100만원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1억 × 20% = 2,000만원 4. 합계 : 176,000,000원 IV. 보험자 보상책임 1. 부상 (총 치료비 + 치료 기간 상실수익) 3,800만원 > 한도 1,500만원 ▶ 1,500만원 보상 2. 장애 (상실수익 + 위자료) 13,800만원 > 한도 4,500만원 ▶ 4,500만원 보상	2. 소극적 손해 1) 치료 상실수익 ① 사고 ~ 퇴원: 500만원×100%×3H=1,500만원 ② 퇴원이후 ~ 치료종료: 500만원×20%×2H(5-3)=200만원 ③ 계 : 1,700만원 2) 이후 상실수익 ①치료종료~정년: 500만원×20%×100H(105-5)=10,000만원 ②정년이후~가동종료: (15만원×20일)×20%×30H(135-5)=1,800만원 ③ 계 : 11,800만원 3) 소계 : 13,500만원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1억 × 20% = 2,000만원 4. 합계 : 170,000,000원 IV. 보험자 보상책임 1. 부상 (총 치료비 + 치료 기간 상실수익) 3,200만원 > 한도 1,500만원 ▶ 1,500만원 보상 2. 장애 (상실수익 + 위자료) 13,800만원 > 한도 4,500만원 ▶ 4,500만원 보상
P314	3) 소계 : 425,000,000원 2. 소극적 손해 1) 사고~치료종료	3) 소계 : 425,000,000원 × (1-50%) = 21,250만원 2. 소극적 손해 1) 사고~치료종료

	(15만원×20일) × 100% × 10H = 30,000,000원 2) 치료종료~가동종료 (15만원×20일) × 100% × 40H(50-10) = 120,000,000원 3) 소계 : 150,000,000원 3. 합계 : 575,000,000원 Ⅲ. 보험자보상책임 57,500만원 > 보상한도 15,000만원 ▶ 15,000만원 보상	(15만원×20일) × 100% × 10H = 30,000,000원 2) 치료종료~가동종료 (15만원×20일) × 100% × 40H(50-10) = 120,000,000원 3) 소계 : 150,000,000원 × (1-50%) = 7,500만원 3. 합계 : 28,750만원 Ⅲ. 보험자보상책임 28,750만원 > 보상한도 15,000만원 ▶ 15,000만원 보상
P315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수렵행위 도중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유통 에 의하여	엽견
P326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식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하며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일반임금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고정성 삭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식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한다.
P355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